



변희찬

변호사

TEL 02-316-4062
FAX 02-756-6226
E-MAIL hcbyun@shinkim.com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각종 조세관련 소송 및 행정소송, 환경침해로 인한 환경관련 소송 등입니다.

변희찬 변호사는 1987.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경향 각지의 판사를 역임하였고,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를 거쳐 마지막으로 200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쳤습니다.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조세조에 소속되어 조세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총론 등을 강의하였으며, 당시 세무사회에 위촉되어 세무사 등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과목을 강의하고, 사법시험 1차과목인 조세법의 출제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형사재판실무 총괄교수로서 형사교수실을 이끌었으며,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시에는 환경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아 1년동안 각종 소음 관련 소송, 어업권관련 소송, 일조침해 소송 등 다양한 환경침해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종에서 변호사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일반 민, 형사 사건은 물론 행정소송, 조세소송 등 공법분야 소송을 많이 수행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수임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으며,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21-현재	전남도지사 법률분야 정책고문
2019-202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19-202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2018-현재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2015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2011-2013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0-2012	행정안전부 법률고문
2008-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7-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7	사법연수원 교수
2002-200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199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7-1998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5-1997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3-199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1993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1989-1991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7-198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85-1987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역대 최대 규모(불복세액 약9천억원)의 공공기관 조세불복 사건 진행
-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비율의 산정방식에 관한 소송
- 약 450억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약 100억원대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약 350억 원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지자체 사이의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 여러 건

학력

1998-1999	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1977-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1974-1977	부산 동아고등학교

자격

1987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농민이 철원군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농경지 복구공사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39호, 2001. 하반기)
-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조사업무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조사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35호, 2001. 6.)
- 골프회원권과 무수익자산(대법원판례해설 제35호, 2001. 6.)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소정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 하는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종과되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 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자기소유 부동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위 종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2000. 상반기)
- 유언집행자(재판자료, 상속법의 제문제 78집, 1998.)

외부 평가

- 리컬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2021-2022)
- Legal500 Tax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2020)